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6
----------	-----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령 일부개정(「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06. 6. 4 시행)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위원중 속초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에 편성 (안 제2조)
- 나. 협의회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중 일부 삭제 (안 제3조, 안 제4조)
 - ▶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시·도협의회 권한사항
- 다. 협의회 간사 담당부서 일부 변경 : 민방위담당 ⇒ 재난안전관리과장
- 라. 통합방위지원본부 반편성 수정 (안 제6조)
 - ▶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 마.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개선 (안 제7조)
 - ▶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나. 관계법령 : 별첨
-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생략
 - ※ 통합방위협의회위원회에게 공문 발송, 의견수렴 : 별도 의견사항 없음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

11. 속초소방서장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관리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5790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제6조제4항중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한다.

제6조제6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부터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 구성) ① ~ ② (생략) 1. (생략) 2. 강원도 속초교육청 교육장 3. ~ 10. (생략) 〈신설〉 11. (생략)	제2조(협의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 3. ~ 10. (현행과 같음) 11. 속초소방서장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u>을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u> 3. ~ 9. (생략)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9.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 운영) ① (생략) ②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조제2호의 <u>을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u>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서삭제>
③ (생략) 1. <u>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u> 2. ~ 3.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관리과장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시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지원반, <u>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군·경연락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u>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u> -----

현행	개정안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2.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u>	다. <u>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u>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임무

기 구 명	임 무
지 원 본 부 장	1.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을 감독 2.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3.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4. 예하 행정관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5.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6.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를 유지 7.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8.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상 황 실 (장)	1.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 통제 2. 신속 정확한 정보 전파 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지시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시 방위협의회에 건의 5. 예하 행정관서의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6.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총 괄 지 원 반 (장)	1.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2.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인 력 · 재 정 지 원 반 (장)	1.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3.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4.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5.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6. 주민통제 업무를 관장 7. 예산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8. 지원본부 예산운영 결산 9.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기 구 명	임 무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장)	1.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2.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3.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4.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5.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업무 관장
의료·구호지원반(장)	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의료 구호조를 편성 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 조정 통제 3.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4.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5.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수행 6.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된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통신·전산지원반(장)	1. 통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3. 종합통신운용계획 수립 시행 및 감독 4. 통신지원조 편성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5. 국가동원계획의 통신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보급·급식지원반(장)	1.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지원 업무 관장 2.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3.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 동원집행 준비
홍보지원반(장)	1.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2. 홍보매개체의 조정 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운영 3.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4.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 시행
군·경연락반(장)	1.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2.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합동상황실에 보고

신 · 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기구명	임무	기구명	임무
지원본부장	1.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을 감독 2.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3.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4. 예하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5.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6.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 체제를 유지 7.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8.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지원본부장	1.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을 감독 2.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3.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4. 예하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5.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6.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 체제를 유지 7.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8.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상황실(장)	1.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2.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시 방위협의회에 건의 5. 예하 행정관서의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6.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상황실(장)	1.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 통제 2.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지시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시 방위협의회에 건의 5. 예하 행정관서의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6.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총괄지원반(장)	1.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2.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총괄지원반(장)	1.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2.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현행		개정안	
기구명	임무	기구명	임무
인력동원 지원반 (장)	1.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관장 2.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3.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4.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5.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6. 주민통제 업무를 관장 <신설> <신설> <신설>	인력·재정 지원반(장)	1.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3.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4.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5.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6. 주민통제 업무를 관장 7. 예산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8. 지원본부 예산운영 결산 9.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건설·수송 지원반 (장)	1.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 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2.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3.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4.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5.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관장	산업·수송·장비 지원반 (장)	1.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 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2.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3.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4.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5.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업무 관장
의료·구호 지원반 (장)	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의료·구호조를 편성 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통제 3.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4. 국가동원 계획이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5.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수행 6.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의료·구호 지원반 (장)	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의료 구호조를 편성 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 조정 통제 3.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4.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5.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수행 6.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현행		개정안	
기구명	임무	기구명	임무
<u>통신지원반(장)</u>	1. 통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3. 종합 통신 운용계획 수립 시행 감독 4.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5.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u>통신·전산지원반(장)</u>	1. 통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3. 종합통신운용계획 수립 시행 및 감독 4. 통신지원조 편성·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5. 국가동원계획의 통신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u>보급·급식지원반(장)</u>	1.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지원업무 관장 2.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3.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 동원 집행 준비	<u>보급·급식지원반(장)</u>	1.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지원업무 관장 2.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3.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 동원집행 준비
<u>홍보지원반(장)</u>	1.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2. 홍보매개체를 조정·통제하고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3.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4.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u>홍보지원반(장)</u>	1.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2. 홍보매개체의 조정 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운영 3.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4.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 시행
<u>재정지원반(장)</u>	1.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2.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3.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준비		〈삭 제〉
<u>군·경연락반</u>	1.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2.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합동상황실에 보고	<u>군·경연락반(장)</u>	1.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2.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합동상황실에 보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5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29, 2006.2.21, 2006.3.3>

1.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라 함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요소를 말한다.
 - 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라. 「항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항토예비군
 - 마. 「민방위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 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 내지 제8호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라 함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라 함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갑종사태"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라 함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라 함은 침투 및 도발이 예상되는 적의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반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등) ①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원활한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서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소요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앙통합방위협의회) ①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29, 2005.3.24>

③중앙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분부장이 된다.

④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정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중앙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06.3.3>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직장통합방위협의회) ①직장에는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3.3>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 (통합방위본부) ①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통합방위본부는 본부장 및 부분부장 각 1인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분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1.12.29>

③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정책의 수립·조정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3. 통합방위작전상황의 종합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사업집행사항의 협의·조정

④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내 업무협조 기타 통합방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 또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대통령은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중사태나 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협회의 심의를 거쳐 을중사태 또는 병중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중사태 또는 병중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선포일시·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요건 및 절차, 공고방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대한 통고등) ①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대통령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그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시·도의회에서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⑤시·도지사가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의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통합방위작전) ①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관할구역:특정경비지역·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관할구역: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관할구역: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②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다만, 을중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갑중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각각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1. 경찰관할지역:지방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공군작전사령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범위 기타 통합방위작전의 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④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작전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 (통제구역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기준·절차 및 공고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대피명령)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안에 있는 주민이나 체재자에 대하여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확성기·벽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경비·보안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

④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방호지원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6조 (합동보도본부등) ①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배치·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

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오지) 또는 벽지(벽지)
2. 간첩 및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3. 적의 저공(저공) 침투 또는 저속 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개활지)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 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강안)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제17조의2 (검문소의 운용) ①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 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②검문소의 지휘·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8조 (신고) 누구든지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에 관한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개정 2001.12.29>) ①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2.29>

제20조 (벌칙)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퇴거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5264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 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장관·공보처장관·국가보훈처장"을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5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48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34>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853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약지역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은 제 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방위태세 확립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동원소요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소요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기타 법 제4조의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비용

제4조 (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2. 기타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5조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관련 업무의 조정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소요비용
3. 기타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6조 (중앙협의회의 소집등) ①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3.31, 2006.5.30>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역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⑤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⑥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8조 (직장협의회를 두는 범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1. 중대급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도 원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제9조 (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직장협의회는 당해 직장예비군부대의 장과 당해 직장의 간부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직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장예비군의 운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직장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산업단지협의회) ①동일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부대를 편성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내에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3.6.30, 2006.5.30>

②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 기타 산업단지내 기업체의 대표등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5.30>

③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예비군부대의 육성·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④산업단지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①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부대 또는 기관과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의 종합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제12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 각 중앙협의회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3. 각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②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정부 각 부처간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조정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③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2.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④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내에 두도록 한다. <개정 2006.5.30>

제15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①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인접한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시 운영한다.

②합동상황실은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당해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06.6.29>

③기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8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절차등) ①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는 중앙협의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해당지역의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검문소의 설치·운용 등) ①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항만 등의 지상과 해상의 교통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등은 국가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6.6.29>

②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6.6.29>

③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운용하는 때에는 국가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6.6.29>

[본조신설 2002.3.30]

제19조 (검문절차등) ①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작전 임무수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 수상자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인근의 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③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 또는 총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작전임무수행자는 자신의 신분과 소속·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제20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교전등으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비작전요원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기타 비작전요원의 출입으로 인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이 통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등이 통제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설정구역·설정사유와 통제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 전단살포
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5. 타종·경적·신호기의 계양

제22조 (대피명령의 실시방법 및 절차)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실시함에 있어서 작전지휘관은 주민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5조제2항 및 제21조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관·경·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안의 주민 및 체재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④대피구역안의 주민 및 체재자는 물자 및 장비를 적이 침투·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대피방법) ①작전지휘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시간·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 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민 및 체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요원의 지시 또는 안내선박의 신호나 통신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의2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시설주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강구

2.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경찰·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제24조 (취재활동의 지원)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작전지휘관은 1일 1회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상황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통합방위작전의 진행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 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된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작전지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안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1인 또는 수인의 선정된 대표자에 한하여 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⑤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의 구체적인 침투·도발행위 내용과 아군의 통합방위작전상황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동안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에 중앙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06.5.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합동보도본부는 각 방위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지휘소 인접 지역에 설치하되, 필요시 취재활동이 용이한 지역에 현지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개활지·호수의 정의)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활지 또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이상, 길이 250미터이상의 규모(길이방향으로 전·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이상)
2. 개활지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이내, 좌·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이상

제2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해역·해안 및 도서 등의 지역 중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말한다.

②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 환경의 변화실태 등을 검토·분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6.5.30]

제27조의2 (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①지역군사령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지역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28조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의 경우 평시에 이를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임목

나. 모래방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29조 (문책요구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자가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장비·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보고·지연보고, 즉각대응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때

4. 기타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길도록 하는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②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법 제19조의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의 소속기관 또는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5383호,1997.5.31>

이 영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를 "국가정보원관계자"로 한다.

<22>내지 <28>생략

부칙 <제17557호,2002.3.30>

이 영은 200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8>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490호,2006.5.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자치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 중 특별자치도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중 "경찰"을 각각 "국가경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9>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속초시의회의장
2. 강원도 속초교육청 교육장
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4. 국가정보원 속초대공상담소장
5. 속초경찰서장
6. 속초해양경찰서장
7. 육군제522기무부대장
8. 육군제5790부대장
9. 육군1799부대 참모장
- 10.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장
- 11.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을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4. 방위협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각목의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 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감독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7.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8. 취약지역의 대비책
9. 기타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협의회 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조 제2호의 을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2.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5790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속초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시·동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시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군·경연락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동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 2~3명으로 구성한다.

⑥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⑦기타 지원본부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 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 가. 10년생 이상의 임목
 - 나. 모래방커 또는 연못
 -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